

대통령령 제 호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2(과세정보의 제공 요청)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11항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출제위원 지정 또는 위촉일로부터 이전 3년 간의 「소득세법」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3(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에 대한 예외적 승인) 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법 제34조제13항에 따른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직제와 정원의 개정·폐지,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일 것
2. 법 제34조제13항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
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, 신청 사유 및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7조의2(과세정보의 제공 요청)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11항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출제위원 지정 또는 위촉일로부터 이전 3년 간의 「소득세법」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<신 설>	제37조의3(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에 대한 예외적 승인)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법 34조제13항에 따른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	1. 직제와 정원의 개정·폐지,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일 것 2. 법 제34조제13항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, 신청사유 및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890